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3933

발의연월일: 2021. 12. 16.

발 의 자:이상헌・유정주・한병도

김진표 · 장철민 · 임오경

신동근・이동주・박 정

유동수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(圖書)나 문화예술 재화·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(認證)하고,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재 시장에 도서·문화를 포함하여 유통·식음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문화상품권이 보급되어 있어 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, 이에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인증신청 및 실제 인증 사례가 없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불필요하고 사문화된 규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5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도서·문화 전용 상품권	<u>&lt;</u> 삭 제>
인증제도) ①국가는 문화예술	
<u>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</u>	
위하여 도서(圖書)나 문화예술	
재화·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	
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	
(認證)하고, 그 사용을 촉진할 수	
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	
②제1항에 따른 상품권의 인증	
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	
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